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김재섭·박수영·엄태영
백종헌·서천호·강승규
안철수·신성범·최수진
김기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·중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,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·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0조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중 “통합하여 운영”을 “통합(학교급을 통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신설하여 통합·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학교의 통합 · 운영) ① 학교의 설립자 · 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· 중학교, 중학교 ·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의 시설 · 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	제30조(학교의 통합 · 운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통합 (학교급을 통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신설하여 통합 · 운영-----.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